



1997년 10월호 제10호 발행인:고창순 편집: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주소: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-12 전화:02)566-1092(대) FAX:02)566-1094 인쇄:성문사 비매물

## 제48회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시험

### 1. 면허시험 일자 및 장소

실시분야	일자 및 장소		필기 시험	
	면허의 종류	일자	장소	
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취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</li> <li>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</li> </ul>	97.11.16 (일)	충남대학교 문과대학	

### 2. 원서교부 및 접수

가. 교부 및 접수일자: '97. 10. 16(목)~23(목)

- (평 일) 09:00~18:00
- (토요일) 09:00~13:00

나. 교부 및 접수처

지역	교부 및 접수처	전화번호
서울	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	(02)566-1092
대전	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	(042)861-2537 (042)868-0318, 0493

- 다. 제출서류: 1) 응시원서(소정 서식) 1통(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)  
 2) 응시원서 부분 카드(전산처리용) 1통  
 3) 필기시험 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 
 4) 수수료(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30조)

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면허	
특 수	감 독
20,000원	20,000원

다. 합격사유(원자력법 제92조)

- 1) 18세 미만의 자
- 2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) 원자력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- 4) 원자력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) 정신적 또는 신체적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

### 5. 원서접수시 유의사항

- 경력산출 기준일은 원서접수마감일(97. 10. 23(목))로 합니다.
- 응시자의 경력기간은 원자력법 제103조 및 시행령 제324조에 의거 개인별 방사선 피폭선량을 매 분기별 보고한 기간을 RI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.
-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해당자는 원서접수시 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 증빙서류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외국에서 동일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접수시간의 지연 및 접수창구 혼란 등으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.

### 6. 기타사항

-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: 97. 12. 8(월) 예정
- 면허증 교부에 관한 사항  
방사성동위원소 취급면허 시험 합격자는 원자력법 제9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283조 제2항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 거친 후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(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)에서 소정의 RI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련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면허증 교부 절차

